

##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규정

(제정) 1998-06-19 규정 제027호  
 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84호  
 (개정) 2006-06-05 규정 제167호  
 (개정) 2007-10-10 규정 제184호  
 (개정) 2009-07-22 규정 제211호  
 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34호  
 (개정) 2011-05-17 규정 제274호  
 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293호  
 (개정) 2013-04-18 규정 제318호  
 (개정) 2016-02-18 규정 제389호  
 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 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.> <개정 2016.4.25>

제2조(운영 위원회) ① 생활관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 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<개정 2010.5.3>
2. 생활관 학생 수칙의 제정 및 개폐 <개정 2010.5.3>
3.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2.18>
4. 학생 부담금 결정 <개정 2010.5.3>
5. 기타 중요한 사항

③ 위원회는 생활관장, 교학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체육부장, 생활관 학생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한다. 위원회의 간사는 생활관 담당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09.7.22.><개정 2012.10.15.><개정 2016.2.18.><개정 2016.4.25>

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후임자는 위원직을 승계하고, 학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>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조(생활관장 등) ① 생활관에 생활관장, 관장보를 둔다.

② 생활관장은 이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관장보는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생활관장등의 직능) ① 생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0.5.3>

② 관장보는 생활관장의 명을 받아 학생의 입, 퇴사 관리 및 생활지도를 한다. <개정

2010.5.3>

제4조의 2(관생자치회) ① 생활관 내에서 관생 자치 의식배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자치회 임원은 생활관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 관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생활관내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관생자치회는 생활관장의 지도 활동과 생활관 관리에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.

1. 관내면학분위기 조성
2. 관내활동의 질서유지 및 환경정화
3. 생활관장이 허용하는 기타의 관생활동

④ 관생자치회 임원에 대하여는 근로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, 지급액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<신설 2013.4.18>

제5조(직원) 생활관 관리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수혜자 부담으로 필요한 인원은 예외로 한다.

제5조의2(생활관 수당) 관장과 관장보,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금액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<신설 2013.4.18>

제6조(학생정원) 생활관의 학생정원은 총장이 정한다.

제7조(입사자격) ①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라야 한다.

② 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다.

제8조(입사 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
3. 전염성 질환, 나환자 및 보균자
4. 휴학 중인 자
5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
6.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9조(학생선발)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선발 기간 중에 입사원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3>

② 생활관장은 입사희망자를 심사한 후 학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. <개정 2010.5.3>

③ <삭제 2009. 7. 22>

④ 생활관장은 입사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입사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한다. <신설 2010.5.13>

제10조(입사 절차) 입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정 기간내 생활관비 납부 후 건강 진단서와 소정의 입사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7.22., 2010.5.3., 2016.2.18>

제11조(퇴사 처분)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처분하고 학생 소속 학과에 통보한다.

1. 생활관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<개정 2010.5.3>
2. 생활관 납부금 체납자
3.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
4. <삭제 2009.7.22>

제12조(퇴사신고) 학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 생활관장에게 제출한 후 퇴사한다.

제13조(입사기간) 입사허가기간은 한 학년도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4조(경비 부담) 생활관의 시설비, 시설보조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.

제15조(납부금) ① 학생이 납부할 입사비, 관리비 및 식비는 따로 정한다.

② 납부금의 환불은 생활관 운영지침에 의거 환불한다.<개정 2011.5.17>

제16조(납부금의 납기) 입사비, 관리비 및 식비는 생활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.

제17조(예산과 결산) ① 생활관장은 매학기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2.10.15>

② 삭제 <개정 2016.2.18.>

제18조(평가 및 사후관리) ① 학생생활관은 학생생활관생을 대상으로 생활관 신설, 생활관생 복지, 구내식당 등 생활관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한다.

②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고,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차후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. <신설 2016.2.18>

부 칙(1998. 6. 19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10. 19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6. 5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10. 10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7. 22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5. 17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15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4. 18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2. 18)

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